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19가단49923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안

담당변호사 최병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주은, 이시형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2021. 11.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193,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5. 20.경 원고와 사이에 포천시 C 지상 동식물관련시설 신축 및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중 선수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다.

나. 원고는 2019. 6. 14.경 피고로부터 선수금 3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9. 7. 15.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준공예정일을 2019. 8. 31.로 변경해 주고, 피고의 요청으로 증액된 공사비 24,200,000원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324,200,000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2019. 8. 6.경 피고에게 기성금 82,417,973원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5.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2019. 9. 24.경 피고에게 선수금 및 기성금 미지급, 준공예정일 및 계약금액 변경 미합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를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2019. 9.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기성금 지급 지체 등을 이유로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61,740,000원 및 추가공사비 4,453,761원을 합한 66,193,761원에서 선수금 30,000,000원을 공제한 36,193,7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하면서 민형사상 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 2) 이 사건 공사에는 부실시공 등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61,740,000원은 과다하다1) .
- 3)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D동 앞마당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7.경 피고에게 “당사는 2019. 5. 7.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E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달청 전자입찰로낙찰되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로서 본 제품설치공사가 당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아래와 같이 성실하게 시공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본 각서 내용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의 범위 내에서 당사에 대한 일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간의 소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성실시공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이행각서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지급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성 공사비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19. 9. 25.경 해제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단 시점인 2019. 8. 5.을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은 20.58% [=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65,885,897원 /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65,885,897원 +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254,195,727원) × 10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인 300,000,000원에 기성고 비율 20.58%를 곱한 61,740,000원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비

1)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의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동 앞마당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한 사실, 위 공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가공사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61,740,000원에서 선수금 30,000,000원을 공제한 31,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일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일 다음날인 2019. 8. 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공사 도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 기성부분이 이미 도급인에게 인도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행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34050 판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현

1)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나, 상계로 대항하고자 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액수를 특정한바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상계 항변으로 보아 판단하지는 아니한다.